

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디자인보호법</p> <p>[시행 2024. 8. 7] [법률 제20200호, 2024. 2. 6, 타법개정]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디자인보호법</p> <p>[시행 2025. 7. 22] [법률 제20692호, 2025. 1. 21, 일부개정]</p>
<p>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⑥ (생략)</p>	<p>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<b>3배</b>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</p>	<p>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<b>5배</b>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</p>
<p>⑧ (생략)</p>	<p>⑧ (현행과 같음)</p>